(건축-006) 상업시설현장 차량 탑재형 고소작업대 전도사고

공사명	○○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사고일시	2017년 8월 29일(화) 10:15분경		기상상태	맑음
소재지	강원도 원주시	사고 종류	넘어짐(전도)	
구조물 손실	_	인적피해	부상 2명	
장비 손실	스카이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대상 여부	해당(),	해당없음(〇)

가. 사고개요

1) 공사개요

○ 용도 : 근린생활시설

규모: 지하 2층/지상 6층공사기간: 2016.3~2017.9

2) 사고경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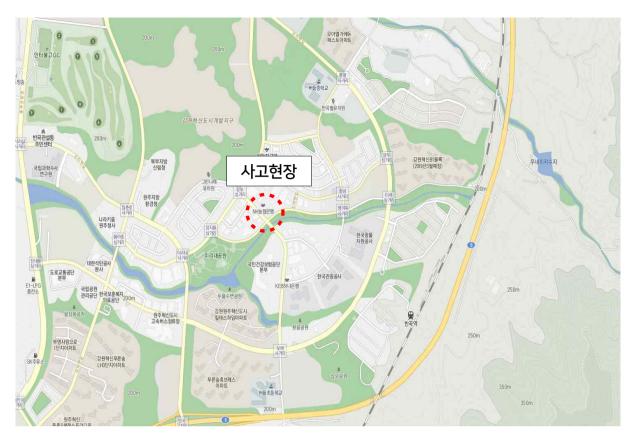
○ 인접건축물(협소구간)의 외벽청소(민원청구사항으로 준공이전 외벽청소요구)작업을 위해 스카이 장비(5t, 붐최대길이 45m, 작업대 허용승차기준 300kg)의 붐대를 35m가량 인출상태로 5층 외벽 청소후 4층으로 이동하던 중 고소작업 차량이 전도되어 작업 중인 근로자 2명 추락

3) 사고원인

○ 스카이장비의 아웃트리거를 지지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조경구간 지반(비다짐구간)에 설치한 상태로 고소작업을 실시하던 중 아웃트리거를 지지하는 위치의 지반침하로 전도사고 발생 추정

나. 재발방지대책

- 연약한 지반에 크레인의 아웃트리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부(脚部)나 가대(架臺)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깔판·깔목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 사업주는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는 경우에 그 이동식 크레인의 구조 부분을 구성하는 강재 등이 변형되거나 부러지는 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이동식 크레인의 설계기준(제조자가 제공 하는 사용설명서)과 사용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 사업주는 유압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이동식 크레인의 과도한 압력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밸브는 최대의 정격하중이 작용할 때의 압력 이하로 작동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 사업주는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이동식 크레인 명세서에 적혀 있는 지브의 경사각(인양하중이 3톤 미만인 이동식 크레인의 경우에는 제조한 자가 지정한 지브의 경사각)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고현장 위치도



사고 사진 전도된 고소작업대의 붐대인출현황



사고 사진 침하방지 깔판 미설치

